

【제 1295 호】



2016년 8월 2일 (화)

고양시보

차 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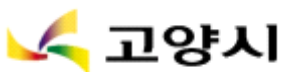
입법예고

고양시 공고 제2016-1179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

고양시 공고 제2016-1181호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

공 고

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6-154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6



| 발행 : 고 양 시 | 편집 : 공보담당관 |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.
| (우)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 600) | ☎ (031) 8075-2095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8월 2일

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개정이유
 - 규칙에 명시된 호수공원 이용시간이 현재 운영되는 부분과 상이하여 정비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- 가. 상위 법령 근거조항을 정비함.(안 제3조제5호)
 - 나. 호수공원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나 규칙에는 이용시간을 한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어,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(안 제18조 제2항)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6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16년 8월 22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인터넷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 (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)

-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)
- 전 화 : 녹지과 공원휴양팀(031-8075-4388)
- 팩 스 : 031-8075-4950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
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의 견	비 고

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“「건축법」 제32조” 를 “「건축법」 제42조” 로 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” 을 “제1항 및 제3항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과		녹지과
입안자	과장 성명	녹지과장 김운용
	팀장 성명	공원휴양팀장 최해찬
	담당자 성명·전화	추민영 (031-8075-4388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) ① 조례 제19조제6호의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생략) 5. 「주택법」 제21조 및 「건축법」 제32조에 따른 건축 인·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정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. 	<p>제3조(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건축법」 제42조.....
<p>제17조(호수공원 개장 및 폐장) ① 호수공원의 개장 및 폐장시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4월 ~ 10월까지 : 05:00 ~ 22:00 2. 11월 ~ 3월까지 : 06:00 ~ 20:00 <p>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시 이를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18조(행사관계) ① 공원 내 행사는 반드시 푸른도시사업소장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. 이때 공원사용승인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.</p> <p>② 행사시간은 제17조에 따른 공원개장시간에 한하여 사용한다. 다만, 푸른도시사업소장 및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행사는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무료 자선공원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할 수 없다. 다만, 영리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는 고양시민을 위한 순수한 행사로써 무료이고,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판단이 되는 행사로써 푸른도시</p>	<p>제18조(행사관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사업소장 및 구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.</p> <p>④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</u> 임의로 행사를 하거나, 영리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행사를 중지할 수 있고 주최자와 주관자에게 3년간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.</p>	<p>④ <u>제1항 및 제3항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8월 2일

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2. 개정이유

-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(2016. 7. 5. 조례 제1778호) 전부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규칙의 제명을 「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」에서 「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」으로 변경함.
- 나. 기금의 명칭을 “여성발전기금”에서 “성평등기금”으로 변경함.
(안 제1조, 제2조, 제11조)
- 다. 기금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.(안 제3조)
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6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16년 8월 22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인터넷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 (여성가족과)

○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(주교동, 충헌빌딩 4층)

○ 전 화 : 여성가족과 여성인력개발팀(031-8075-3343)

○ 팩 스 : 031-8075-4916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자치법규명 :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- 성명(단체명) :
 - 주 소 :
 -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의견	비고

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”을 “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1조에 따른 고양시 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”를 “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여성발전기금”을 “성평등기금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고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2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권익증진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
2.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및 성평등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 및 단체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금지원 신청)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

른 기금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 위배 여부

제6조제1항 중 “붙여” 를 “첨부하여” 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령에 따른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
제9조 중 “붙여” 를 “첨부하여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 중 “여성발전기금” 을 “성평등기금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여성발전기금 지급대장” 을 “성평등기금 교부대장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제목 “여성발전기금 지급대장” 을 “성평등기금 교부대장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과		여성가족과
입안자	과장 성명	여성가족과장 박순화
	팀장 성명	여성인력개발팀장 송진우
	담당자 성명·전화	정유경 (031-8075-3343)

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

기관(단체)명			대 표 자	
			실 무 자	
소 재 지	우편번호: 주 소:			전화번호
				휴대폰
				팩 스
				이메일
지원사업분야				
사업명				
사업개요				
사 업 비 (단위 : 천원)	계	기금보조 신청액	자체부담액	그 밖의 재원
사업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세부사업계획서	따로 붙임			
<p>「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」 제4조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[신청단체] (직인) [대 표 자] (인)</p> <p>고양시장 귀하</p>				
첨부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계획서 2. 법인(단체)의 정관(회칙) 3. 법인(단체, 기관)의 현황 4. 최근 3년 주요사업 실적 5. 사업계획 요약서 6.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, 기관(시설) 신고(인가)증 사본 7.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			

고양시 성평등기금 교부 청구서

1. 사 업 자 :					
2. 사 업 명 :					
3. 사업기간 : (전화 :)					
4. 사업장소 :					
5. 청구금액 :					
6. 청구내역					
총사업비	소 요 경 비 재 원				산출근거
	기금신청액	자체부담금	후원금	그 밖의 자원	
					따로 붙임
<p>「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>신청자 주소 : 단 체 명 : (인) 대 표 자 : (인) 예금계좌번호 : (은행)</p>					
고양시장 귀하					
구 비 서 류	1.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2.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약정서 3. 사업자등록증 사본 4. 기금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5. 이행(지급)보증보험 증권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기 금 정 산 서

1. 사 업 명

2. 기금집행현황

내역	수입액	지출액	잔액	비고
계				
성평등기금				
자체부담금				
그 밖의 자원				

- 붙임 1.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.
2. 지원금 집행내역 1부.
3. 영수증 사본, 세금계산서 각 1부.
4.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.
5. 각종 증빙자료 각 1부.

「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기관(단체)명 : (인)
대표(사업)자 : (인)
전화번호 :

고양시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성평등기금 관리대장

연월일	적요					수입	지출	잔액
	예금 종류	은행명	계좌 번호	이율	기간	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38조에 따라 고양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지원사업”이란 고양시 여성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기금의 지원대상은 「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9조에 따라 사업과 활동으로써 관련 행정기관의 장 및 여성복지관련단체의 장과 그 밖의 민간인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기금지원신청)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사업계획서</p> <p>2. 단체의 정관(단체에 한함)</p> <p>3.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(단체에 한함)</p> <p>4. 그 밖의 필요한 서류</p>	<p><u>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1조에 따른 고양시 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성평등기금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고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2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권익증진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</p> <p>2.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및 성평등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 및 단체</p> <p>제4조(기금지원 신청)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〈삭 제〉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〈삭 제〉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〈삭 제〉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〈삭 제〉</p>

현행	개정안
----	-----

(3-2)

1. 사업계획

가. 사업명

나. 목적

다. 내용

라.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

(단위 : 천원)

내역	소요금액	산출근거	지원신청액

마. 소요예산 조달방법

(단위 : 천원)

구분	금액	비고
계		
여성발전기금		
시 지원금		
동 사업수익금		
자체운영자금		
회원모금		
독지가후원금		
그 밖의 자원		

<삭제>

현 행

개 정 안

(3-3)

바. 정부보조금(국·도비, 시비·여성발전기금)지원실적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사업기간	지원금액	보조금 구 분	비 고

2.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

가. 단체의 구성현황

임 원 수				회 원 (단 원) 수			
회 장	부회장	이사	그 밖의 임원	계	정회 원	준회 원	그 밖의 회원
명	명	명	명	명	명	명	명

나. 활동실적

기 간	활 동 내 용	비 고

3.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

등록(허가신고) 일 자	등록(허가신고) 내 용	등록(허가신고) 번 호	등록기관명

<삭 제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2호서식]</p> <p>고양시 여성발전기금 교부 청구서</p>	<p>[별지 제2호서식]</p> <p>고양시 성평등기금 교부 청구서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1. 사 업 자 :</p> <p>2. 사업장소 : (전화 :)</p> <p>3. 사업기간 :</p> <p>4. 청구금액 :</p> <p>5. 청구내역 :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총사업비</th> <th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 요 경 비 재 원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산출근거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기금 신청액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시지원 금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자 체 부담금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후원금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그 밖의 재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height: 30px;"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「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신청자 주소 : 단 체 명 : (인) 대 표 자 : (인) 예금계좌번호 : (은행)</p> <p>고양시장 귀하</p>	총사업비	소 요 경 비 재 원					산출근거	기금 신청액	시지원 금	자 체 부담금	후원금	그 밖의 재원								<p>1. 사 업 자 :</p> <p>2. 사 업 명 :</p> <p>3. 사업기간 :</p> <p>4. 사업장소 : (전화 :)</p> <p>5. 청구금액 :</p> <p>6. 청구내역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총사업비</th> <th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 요 경 비 재 원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산출근거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기금 신청액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자 체 부담금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후원금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그 밖의 재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height: 30px;"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따로 붙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「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신청자 주소 : 단 체 명 : (인) 대 표 자 : (인) 예금계좌번호 : (은행)</p> <p>고양시장 귀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px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구 비 서 류</td> <td> 1.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2.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약정서 3. 사업자등록증 사본 4. 기금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5. 이행(지급)보증보험 증권 </td> </tr> </table>	총사업비	소 요 경 비 재 원				산출근거	기금 신청액	자 체 부담금	후원금	그 밖의 재원						따로 붙임	구 비 서 류	1.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2.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약정서 3. 사업자등록증 사본 4. 기금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5. 이행(지급)보증보험 증권
총사업비		소 요 경 비 재 원						산출근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금 신청액	시지원 금	자 체 부담금	후원금	그 밖의 재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사업비	소 요 경 비 재 원				산출근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금 신청액	자 체 부담금	후원금	그 밖의 재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따로 붙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비 서 류	1.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2.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약정서 3. 사업자등록증 사본 4. 기금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5. 이행(지급)보증보험 증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
(2-2)																								
1. 지원사업 추진실적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사 업 개 요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추 진 실 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효 과 과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문제점 및 건의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사 업 개 요		추 진 실 적		효 과 과		문제점 및 건의		<u><삭 제></u>															
사 업 개 요																								
추 진 실 적																								
효 과 과																								
문제점 및 건의																								
2. 지원금 집행내역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(단위 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집 행 내 역</th> <th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집 행 액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여성발전 기 금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시지원 금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자 체 부담금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그 밖의 재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계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height: 300px;"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집 행 내 역	집 행 액					계	여성발전 기 금	시지원 금	자 체 부담금	그 밖의 재원	계												
집 행 내 역		집 행 액																						
	계	여성발전 기 금	시지원 금	자 체 부담금	그 밖의 재원						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					개 정 안										
[별지 제4호서식] 여성발전기금 관리대장										[별지 제4호서식] 성평등기금 관리대장										
연월일	적요	예탁금내역					인출금	예탁금잔액	이자발생액	이자수납액	비고	연월일	적요					수입	지출	잔액
		금액	종별	계좌번호	이율	기간							예금종류	은행명	계좌번호	이율	기간			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[별지 제5호서식] 여성발전기금 지급대장					[별지 제5호서식] 성평등기금 교부대장				
연월일	적 요	채 주	지급액	비고	연월일	적 요	채 주	교부액	비고

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

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(속칭 대포차)로 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·요청 등)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1. 공고명칭 :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
2. 공고기간 : 2016.08.02. ~ 2016.08.17.(15일간)
3. 공고대상 : “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” 참조
4. 공고내용

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타 의문 사항은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(☎031-8075-477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.

2016. 08. 02.

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장

은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

연번	자동차등록번호	차명	소유자	은행정지명령 사유	은행정지명령일자	비고
1	80루369*	포터II	박*기	소유자 신청	2016.07.22	
2	인천82나510*	코람도밴	박*기	소유자 신청	2016.07.22	
3	27다092*	SM7	민*준	소유자 신청	2016.07.22	
4	89도548*	봉고III	주*홍	소유자 신청	2016.07.25	
5	19소892*	벤츠 S500L 4MATIC	주*홍	소유자 신청	2016.07.25	
6	07허593*	그랜저	(주)엔터***코리아	소유자 신청	2016.07.27	